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에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삭제 및 새롭게 도입된 창업기업 확인제도가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(안 제2조, 제18조)

- ① (사업분리 요건 삭제)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에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삭제
- ② (행정정보 이용)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행정정보 이용사업으로 추가하고 창업기업 확인을 행정정보로 등록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29. ~ 8. 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

- 규제 일부 신설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4조의2제1항, 제4조의3제2항 및 법 제9조의4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창업기업확인서

< 참고 >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조(사업분리의 요건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.</u> <u>1.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</u> <u>2.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</u> 제18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중소기업부장관(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)은 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4조의3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	<u><삭 제></u> 제18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4조의2제1항, 제4조의3제2항 및 법 제9조의4----- ----- ----- -----

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 1. ~ 22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. ----- ----- --- 1. ~ 22. (현행과 같음) <u>23. 창업기업확인서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	
연 락 처	(042) 481 - 4384